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. 6. 9 선고 2015가합5067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존재확인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 고 F

변론 종결 2016. 5. 26.

판결 선고 2016. 6. 9.

주 문

1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의 공유자들이다.

나. G은 2015. 5. 14. 피고에 대한 1억 7,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0853호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 요지

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, 피고의 채권자인 G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,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.

3. 판단

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,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·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,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제3채무자인 원고들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·취소 또는 본안의 제소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,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·불안을 제거할 수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,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최미영, 판사 박 민

별지)

부동산 목록

1. 충청남도 태안군

임야 18174㎡

- ☐ 지분 27801분의 6612
- ☐ 지분 27801분의 6612
- ☐ 지분 27801분의 4960
- ☐ 지분 27801분의 4960
- ☐ 지분 27801분의 4657

2. 충청남도 태안군

임야 4960㎡

- ☐ 지분 27801분의 6612
- ☐ 지분 27801분의 6612
- ☐ 지분 27801분의 4960
- ☐ 지분 27801분의 4960
- ☐ 지분 27801분의 4657

3. 충청남도 태안군

임야 4657㎡

- ☐ 지분 27801분의 6612
- ☐ 지분 27801분의 6612
- ☐ 지분 27801분의 4960
- ☐ 지분 27801분의 4960
- ☐ 지분 27801분의 4657

끝.

